

##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54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정부기관 또는 장학 단체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장학금의 종류) 각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.

### 1. 신입생 특대장학금

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자 중 학부과정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### 2. 면학장학금

가. 학업성적이 평균 85점 이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나. 장학생의 배정은 학과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한 후 그 잔여인원은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, 학과책임교수에게 선발을 의뢰한다.

### 3. 교직원 장학금

본 대학교 교직원(학교법인 동아학숙 포함)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 다만 일반대학원과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직원 본인은 제외한다.

### 4. 근로장학금

대학원 소속의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### 5. 교육조교장학금

가.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교육조교로 근무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나. 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조교직을 사임할 시에는 수혜받은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
### 6. 외국인장학금

외국인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### 7. 고시장학금

사법, 행정, 기술, 공인회계사 등 각종 고시에 1차 합격한 전일제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### 8. 가족장학금

본 대학교에 2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는 경우 대학원·전문대학원·특수대학원 학생 중 연장자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## 9. 기타 장학금

제4조(장학금 지급제한 등) ① 제3조 각호의 장학금 지급은 동일 수혜기간내에 1인 1종에 한한다.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할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장학금을 수혜 받은 사람에게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외기관에서 지원하는 1종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휴학자 및 학칙을 위반한 사람

2. 「대학원 학칙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제5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  - ③ (적용례)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2.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  3.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.